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 추가〉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90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10.
3. 회부연월일 : 2025. 10.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해 시민을 무차별 범죄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으로, 피해자 관점에서는 ‘무차별 범죄’라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예방의 책무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시민들을 무차별 범죄를 포함한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로 규정하려 합니다(안 제3조제1항·제2항).

Ⅲ. 검토의견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 추가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u>안전관리</u> 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u>안전관리와 범죄예방</u> -----.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u>안전관리</u>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 <u>안전관리 및 범죄예방</u> ----- -----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업소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한다는 점과 더불어 구조가 복잡하거나 밀폐·지하·야간 영업 등으로 화재 시 대피가 곤란하다는 점임¹⁾.

<화재안전 관련 다중이용업소와 다른 영업장소 비교>

구 분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장소
법 적 근 거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법 등 일반법
이 용 인 원	불특정다수(대중이용)	특정인 또는 소수인원
안전시설 의무	소화,경보,피난안내도,방염물품 사용	기본 소방시설만 설치
소방안전교육	영업주 및 종업원 정기교육	없음(선택사항)
벌칙·행정처분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일반 위반시 경미한 행정조치

(자료: 소방청)

이 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는데²⁾, 제정 당시의 제안이유 등에 따르면 이 법은 “찜질방 · 노래방 · 전화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 · 밀집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새로운 업종의 출현 등 양적 · 질적으로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대규모 화재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 제7906호, 2006. 3. 24. 제정, 2007. 3. 25. 시행

화재 발생시 영업주의 초기 대처능력 미흡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화재 등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일원화 및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중이용업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³⁾.

한편,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제3조4)⁵⁾.

3)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173674호) 검토보고서, 2006. 2., 5면 참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으로 소화기 등 소화설비, 비상벨 등 경보설비, 완강기 등 피난설비,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6),

이 법에서 의미하는 ‘안전시설등’이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의미함을 알 수 있음.

개정안은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인 일명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현행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의 책무’도 함께 명시하려는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할 수 있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로

5) 참고로 소방청장은 이 법 제3조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참조

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직무 범위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⁷⁾,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화재 등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범죄예방 책무”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치안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이 관장하는데(「정부조직법」 제37조5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⁸⁾.

7)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37조(행정안전부) ①~④ (생략)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7.7.26.>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4.11.19.>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개정안에 관하여 소방청은 이 법에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소방안전교육 등을 규정한 것은 화재 예방에 목적이 있으므로, 개정안 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포함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 목적 및 규제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경찰청은 ‘국가 등의 책무’ 규정에 ‘범죄예방’에 관한 상황을 부여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⁹⁾.

문 의 처

02)6788-5351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9) 참고로 국가와 지자체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부터 시행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활동’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1856호,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5. 7. 30.)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 ※ 범죄예방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국가와 지자체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부터 시행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활동’의 법적 기반을 조성
 -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지자체·주민의 책무 및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명시
 - 관계기관 ↔ 협력단체 ↔ 주민간 협업 강화
 - ※ 경찰청 : 범죄예방정책협의체 / 지자체 :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 現 예방활동 법적 근거 마련 및 ‘범죄 예·경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 ‘연구·개발’ 등 신설

참고 1

현행 다중이용업의 종류 및 현황

(자료: 소방청)

구분		업소수	관계법령	소관부처
총계		168,780		
시행령	1. 휴게음식점	11,056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 일반음식점	56,493		
	3. 제과점	777		
	4. 공유주방	0		
	5. 유흥주점	25,093		
	6. 단란주점	11,324		
	7. 영화상영관	622	영화비디오법	문화체육관광부
	8. 비디오물감상실	98		
	9. 비디오물소극장	19		
	10. 복합영상물제공업	17		
	11. 학원	1,632	학원법	교육부
	12. 목욕장	1,517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13. 게임제공업	2,052	게임산업법	문화체육관광부
	14. PC방	7,415		
	15. 복합유통업	993		
	16. 노래연습장	26,884	음악산업법	
	17. 산후조리원	518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18. 권총사격장	12	사격장안전법	경찰청
	19. 골프연습장	9,256	체육시설법	문화체육관광부
	20. 안마시술소	224	의료법	보건복지부
	21. 고시원	10,985	관계법 없음 (자유업종)	국세청 (사업자 등록)
소계		166,987		
시행규칙	1. 전화방·화상대화방	144	관계법 없음 (자유업종)	국세청 (사업자 등록)
	2. 수면방	89		
	3. 콜라텍	403		
	4. 방탈출카페	63		
	5. 만화카페	132		

구분		업소수	관계법령	소관부처
	6. 키즈카페	962	관계법 없음 (자유업종)	국세청 (사업자 등록)
			관광진흥법 (유기기구 사용시)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놀이시설법 (어린이놀이기구 사용시)	행정안전부
	소계	1,793		

참고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

□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4) 휴대용 비상조명등
-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4. 삭제 <2014.12.23.>
- 5. 그 밖의 안전시설
 -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나. 누전차단기
 - 다. 창문. 다만,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비고

1.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蓄光)하여 빛을 내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4.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畫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